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16
----------	------------

제출년월일 : 2001. 5. .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제안이유

- 농림부와그소속기관직제증개정령(2000.12.30)에 의해 이관되는 충청북도 종자보급소의 기구 및 정원 14명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관련 조례 등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 정원의 총수 : 2,318명 ⇒ 2,332명(14명 증원)
 - 집행기관의 정원 : 1,372명 ⇒ 1,386명(14명 증원)
 - 소방공무원의 정원 : 850명(변동없음)
 -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 44명(변동없음)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52명(변동없음)
- 다른 조례의 개정
 -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
 - 농정국장의 분장사무중 종자보급소 관련 사무 신설
 - 종자보급소 기구 신설 및 사무분장

근거법령 : 따로 붙임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2,318명”을 “2,332명”으로 하고, 동조 제1호중 “1,372명”을 “1,386명”으로 한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647호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2조 표2의 정원의 총수의 정원란중 “2,397”을 “2,411”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의 정원란중 “1,446”을 “1,460”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 제10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보급종 종자생산 및 공급에 관한 사항

제4장에 제7절(제52조 내지 제54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절 충청북도종자보급소

제52조(설치) ①지방자치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급종 종자생산 및 공급을 위하여 충청북도종자보급소(이하 “종자보급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종자보급소는 충청북도 제천시 관내에 둔다.

제53조(소장)종자보급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527 -

제54조(소관사무) 종자보급소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보급종자 생산계획 수립
2. 벼, 보리, 콩, 옥수수 보급종 채종포장 지정 및 포장관리
3. 벼, 보리, 콩, 옥수수 보급종 종자수매 계획수립 및 수매
4. 기타 벼, 보리, 콩, 옥수수 보급종 정선
5. 종자보급계획수립 및 예시
6. 보급종자 민원사항 처리(옥수수는 전국)
7. 보급종자 홍보

신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 (정원의 총수) 충청북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u>2,318</u> 명으로 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 <u>1,372</u>명 2 내지 4 (생략)</p> <p>부 칙(2001. 3. 9 조례 제2647호)</p> <p>제1조 (생략) 제2조 (생략)</p> <p>[표2]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구 분</th> <th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정 원(명)</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정원의 총수</td> <td style="text-align: center;"><u>2,397</u></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 집행기관의 정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u>1,446</u></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 내지 4. (생략)</td> <td></td> </tr> </tbody> </table>	구 분	정 원(명)	정원의 총수	<u>2,397</u>	1. 집행기관의 정원	<u>1,446</u>	2 내지 4. (생략)		<p>제2조(정원의 총수).....<u>2,332</u>명.....</p> <p>1. : <u>1,386</u>명 2 내지 4 (현행과 같음)</p> <p>부 칙(2001. 3. 9 조례 제2647호)</p> <p>제1조 (현행과 같음) 제2조 (현행과 같음)</p> <p>[표2]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구 분</th> <th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정 원(명)</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u>2,411</u></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u>1,460</u></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 내지 4. (현행과 같음)</td> <td></td> </tr> </tbody> </table>	구 분	정 원(명)	-----	<u>2,411</u>	-----	<u>1,460</u>	2 내지 4. (현행과 같음)	
구 분	정 원(명)																
정원의 총수	<u>2,397</u>																
1. 집행기관의 정원	<u>1,446</u>																
2 내지 4. (생략)																	
구 분	정 원(명)																
-----	<u>2,411</u>																
-----	<u>1,460</u>																
2 내지 4.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취

□ 지방자치법

第105條(事業所) 地方自治團體는 특정 業務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事業所를 設置할 수 있다. 다만 地方自治團體의 自治事務만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第103條第1項의 定員範圍안에서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써 事業所를 設置할 수 있다. <改正 94.3.16>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제21조 (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2. 본청·소방학교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총수의 범위 안에서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관리기관별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